



구보

선 람	기관의 장

제1615호 |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규칙 제2023-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포문 2

공 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3-1025호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전 주민공람 공고 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3-1028호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서 공시송달공고 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3-1029호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자진처리 명령 공고 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3-1036호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1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3-1037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직권 정정처리 공시송달공고 1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3-104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안 행정예고 1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3-1043호 2023년 6월 부동산 취득세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공고 3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3-1044호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공고 3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3-1055호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정정공시 공고 4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3-1057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43

고 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3-10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2 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 고시 4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3-106호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분 준공인가 고시 46

회									
람									

규 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규칙(공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 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 정책지원팀 신설(2023. 5. 1.)에 따른 직제 사항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미추홀구의회 사무국 정책지원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담당에 대한 직급 사항 등 직제 사항 반영(안 제2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 배 상 록

2023년 6월 26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규칙 제2023-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사무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사무국”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으로, “의사운영팀”을 “의사운영팀, 정책지원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의사운영담당주사”를 “의사운영담당주사, 정책지원담당주사”로 한다.

제3조 중 “[별표]”를 “별표”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무분장표

사무기구명	팀 명	분 장 사 무
의회사무국	총무팀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3.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4. 의원 관련 등록관리(재산, 병역, 의원등록 등) 5.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사무직원의 인사 관리 7.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및 경력 평정 8. 성과상여금 지급 9. 교육훈련기관 교육 선정, 파견, 수료 10.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1. 의회청사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2. 의회장비 관리 및 물품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사무국 내 다른 분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의사운영팀	1.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2.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3.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4. 각종 위원회의 회의진행 지원 및 보조 5.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사용 및 관리 6.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 7.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8. 의안문서의 보존관리 9.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0.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 11.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2. 의원 국내비교시찰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정책지원팀	1. 의원 입법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3.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5. 구정 질의서, 5분 발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6.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7. 의원연구단체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의정지원팀	1.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2. 의정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4. 의회민원, 진정, 청원 접수처리 등 5.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공 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3-1025호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전 주민공람**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관계 서류의 공람)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2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 가. 사업명: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나. 시행자: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다. 신청내용
 -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90-1번지 일원
 - 구역면적: 20,667㎡
 - 건축면적: 3,404.31㎡(건폐율: 20.61%)
 - 연면적: 73,953.9178㎡(용적률: 298.82%)
 - 건축규모: 5개동, 지하2층~지상29층, 공동주택(56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2. 공람개요

- 가. 공람내용: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관계서류의 사본(흙막이가시설 일부변경)
- 나. 공람대상: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 다. 공람기간: 2023. 6. 26.~2023. 7. 10.(15일간, 토·일·공휴일 포함)
- 라. 공람장소
 - 평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 032-880-4572)
 - 토·일·공휴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당직실(☎ 032-880-4222)
- 마. 참고사항: 공람중인 계획(안)은 행정절차 이행,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결과 등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되어 사업시행(변경)인가 될 수 있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3-10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구 관내에 번호판이 영치된 채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 자동차를 공매하고자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제 목: 자동차 인도명령서
- 2. 공고기간: 2023. 06. 26. ~ 2023. 07. 11. (15일간)
- 3. 공시송달 대상: 송*현 외 13인 (붙임참조)
- 4. 공시송달 내용

가.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 인도명령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단,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인도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되며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인도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 문의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세무2과 징수기동팀(☎ 032-880-4155)

2023. 06. 26.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6월)

연번	차종	차량번호	차량 영치 장소	소유자 인적 사항		반송사유	번호판 보관장소
				성명	주소		
1	마세라티 기블리 디젤	396로6740	석정로279번길21	송○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서로***번길 **.* **동***호(옹현동, 금호베스트빌)	수취인불명	미추홀구 세무2과
2	체어맨 말리부 2.4 DOHC	42나5644	능해길42번길 노상주차장	김○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번길 **, ***동 ***호(옹현동, 액슬루터워)	수취인불명	미추홀구 세무2과
3	제네시스 (GENESIS)	25나2538	경인북길203	김○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 ***호(주안동, 더원시티)	수취인불명	미추홀구 세무2과
4	포터II (PORTERII)	184보5304	경인북길485번길37	진○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 ***호(주안동, 더원시티)	수취인불명	미추홀구 세무2과
5	스파크 1.0 DOHC	95오0754	문학길118-1	강○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길 ***, ***호(문학동, 한빛주택)	수취인불명	미추홀구 세무2과
6	로체	38루5352	경인북길351	황○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 ***동 ***호(학익동, 풍림아이원아파트)	수취인불명	미추홀구 세무2과
7	K5	15루1738	석정로343번길11	장○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번길 **, ***동 ***호(도화동, 대진성응산호빌라)	수취인불명	미추홀구 세무2과
8	BMW 523i	17오5911	석정로10번길35	박○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번길 ***(송의동)	수취인불명	미추홀구 세무2과
9	SMS LPI	05나8785	미추출대로540번길26	박○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남길***번길 **.* **동***호(옹현동, 쓰담쓰담)	수취인불명	미추홀구 세무2과
10	BMW 525I	08조4849	미추출대로698번길36	최○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출대로***번길 **, ***호(주안동, JJ힐)	수취인불명	미추홀구 세무2과
11	싼타페	45라1114	장천로7	유○진	인천광역시 동구 인종로***번길 *(송현동)	수취인불명	미추홀구 세무2과
12	그랜저 (GRANDEUR)	66거3035	문학동350-9	김○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 **.* **동 ***호(만수동, 화평빌라)	수취인불명	미추홀구 세무3과
13	쏘나타 (SONATA)	40수6173	동주길68번길13	오○준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번길 **, ***호(삼산동, 삼산캐슬)	수취인불명	미추홀구 세무4과
14		53다5774	헬크론	김○아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수전원*길 **.* **동***호(정왕동)	수취인불명	미추홀구 세무5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3-1029호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자진처리 명령 공고

우리 구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해야하나,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23. 6. 26 .~ 7. 17. (21일간)

나. 공시송달대상 : 불임참조

다. 공시송달내용

- 1)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됩니다.
- 2)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법 제81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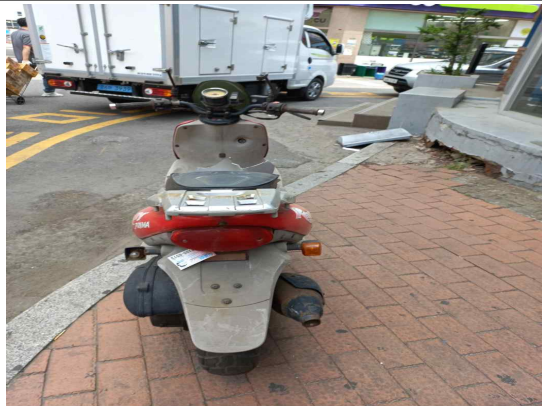
※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은 강제 처리됨.

2023. 6. 2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관리팀
(☎ 032-880-4536) 으로 문의 바랍니다.

소유자 미상 자동차(이륜차) 사진



○ 방치위치:
주안중로 50

○ 보관장소:
(주)인천페차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91
032-814-7077



○ 방치위치:
주안중로 50

○ 보관장소:
(주)인천페차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91
032-814-7077



○ 방치위치:
미추로64번길 5

○ 보관장소:
(주)한신페차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198번길 17
032-590-6913



○ 방치위치:
송의동 60-24

○ 보관장소:
(주)인천페차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91
032-814-7077

소유자 미상 자동차(이륜차) 사진



○ 방치위치:
문화로 22 인천터미널역 4번출구 근처
자전거 거치대

○ 보관장소:
(주)한신편차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198번길 17
032-590-6913



○ 방치위치:
석바위로1번길 17

○ 보관장소:
(주)서울편차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8-5
032-442-6660



○ 방치위치:
한나루로403번길 92

○ 보관장소:
미래인더스(주)편차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481
032-569-5511



○ 방치위치:
도화동 25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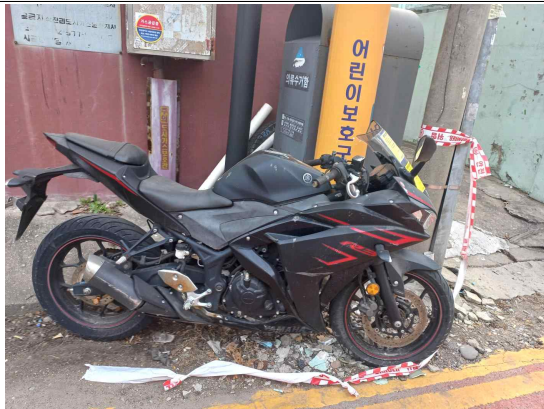
○ 보관장소:
(주)서울편차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8-5
032-442-6660

소유자 미상 자동차(이륜차) 사진



○ 방치위치:
학익정비단지 세기자동차 맞은편

○ 보관장소:
미래인더스(주)페차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481
032-569-5511



○ 방치위치:
한나루로403번길 115-1 옆 전봇대

○ 보관장소:
미래인더스(주)페차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481
032-569-5511



○ 방치위치:
용현동 623-34 새싹어린이공원 모퉁이

○ 보관장소:
(주)인천페차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91
032-814-7077



○ 방치위치:
주안동 284-4 유원주택 1층 상가 앞

○ 보관장소:
미래인더스(주)페차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481
032-569-5511

소유자 미상 자동차(이륜차) 사진



○ 방치위치:
용현동 67-5 이지빌

○ 보관장소:
(주)인천페차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91
032-814-7077



○ 방치위치:
주안동 1430-6 소망교회 맞은편 남부초등학교 담벼락

○ 보관장소:
(주)인천페차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91
032-814-7077



○ 방치위치:
주안동 1430-6 소망교회 맞은편 남부초등학교 담벼락

○ 보관장소:
(주)인천페차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91
032-814-7077



○ 방치위치:
경인북길267-1 신유성그린빌라

○ 보관장소:
미래인더스(주)페차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481
032-569-55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3-1036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제 목: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2. 공고기간: 2023. 6. 26. ~ 7. 11. (15일간)
- 3.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15건

납부자명	납부자번호	부과번호	부과금액(원)	주소	비고
정*숙	790413-*****	000114	24,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54번길 ** *동 ***호 (주안동, **주택)	
오*우	660614-*****	000112	32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전로144번길 ** *층 (도화동)	
오*우	660614-*****	000111	32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전로144번길 ** *층 (도화동)	
조*일	801112-*****	000108	24,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전로168번길 ** *동 ****호 (도화동, ****시티)	
이*면	590929-*****	000106	24,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북로27번길 * (용현동)	
구*철	700413-*****	000105	24,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898번길 **-* ***호 (주안동, **아파트)	
나*식	831215-*****	000104	24,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성동로 * *동 ****호 (용현동, **타운)	
이*진	760320-*****	000103	24,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268번길 ** ***호 (도화동)	
오*영	830504-*****	000113	24,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성중로 *** **동 ***호 (용현동, 엘에이치****단지)	
이*수	000522-*****	000102	24,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호 (도화동, ***시아)	
김*희	581101-*****	000101	32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영로 *-* **호 (주안동, **주택)	
김*숨	991103-*****	000061	24,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514번길 ** ***호 (문학동)	
박*진	640625-*****	000046	50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 , *층 (주안동)	
김*한	960303-*****	000044	40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전로 *** , **동 ****호 (주안동, 주안역****)	
백*곤	530501-*****	000029	50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남로 **-* , ***호 (용현동, **빌라)	

4. 유의사항

위 기간 내에 대상자는 과태료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미추홀구청 자동차관리과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시 부과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증가산(최고60개월까지)금이 부과되며, 독촉고지 납기 내 완납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 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관리과 차량관리팀 ☎(032)880-7372

2023년 6월 26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 2023 - 10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정정 처리한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6월 26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1. 공고내용: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직권 정정처리 알림
- 2. 공고기간: 2023. 6. 26. ~ 2023. 7. 17. (15일 이상)
- 3. 법적근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 4. 대 상 자:

대지위치	소유자(관리자)	건축물대장 정정 사항		의견제출기한
		변경전	변경후	
용현동 6*5-8번지	이*미	주 지상1층 1층5호 - 24.9㎡	주 지상1층 1층5호 근린생활시설 24.9㎡	2023. 7. 17.(월)

5. 게시장소 : 인천 미추홀구청 및 관할 기관 게시판(또는 구보 게재)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가.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신 우리 구 용현동 6*5-8번지 상 건축물대장에 오기가 확인되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직권 변경할 예정이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하니, 의견이 있을 시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서”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건축과(☎ 032-880-47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3-104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26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가 지켜야 할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2. 관련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행정안전부, 2022. 7월)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권익보호(안 제2조 ~ 제3조)
- 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안 제4조)
- 사용자 준수사항 등(안 제5조)
-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영 기준(안 제6조)
- 관리책임자 및 휴대용 보호장비 입·출고 담당자 지정(안 제7조)
-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안 제8조)
-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소의 지정 및 운영(안 제10조)
- 민원인의 열람 등 요구(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참조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민원여권과

○ 주 소: (우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 미추홀구청
종합민원청사 1층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32-880-4214 (FAX: 032-880-4856)

5. 붙임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1. 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가 지켜야 할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권익보호(안 제2조 ~ 제3조)
- 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안 제4조)
- 사용자 준수사항 등(안 제5조)
-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영 기준(안 제6조)
- 관리책임자 및 휴대용 보호장비 입·출고 담당자 지정(안 제7조)
-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안 제8조)
-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소의 지정 및 운영(안 제10조)
- 민원인의 열람 등 요구(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 행정예고: 2023. 6월 중 (초일 불산입 20일 이상)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규 제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 발생 시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의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하며 각각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하여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 포함)(이하 “영상”이라 한다)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써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 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
- 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
- 다. 녹화 시야각 120° 이상
- 라. 녹화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
- 마.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2.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

행위의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 등을 통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써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음성의 녹음

나. 녹음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

다. 녹음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3.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하며, "음성기록"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성 기록물을 말한다.

4.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써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

5.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시스템 관리자"란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실제 운영하는 부서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권익보호)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되,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욕설, 헐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2.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협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 등 (이하 “위법행위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법행위 등을 하고 있거나, 위법행위 등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제5조(사용자 준수사항 등) ①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녹화 또는 녹음 시작과 종료 전에 녹화 또는 녹음 시작 및 종료 사실 고지. 다만, 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등록할 때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2. 녹화 또는 녹음을 마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전송·저장
3.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 아닌 곳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저장·전송 금지
4.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임의 편집·삭제 금지
5. 시스템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제목(녹음제목), 녹화일(녹음일), 녹화내용(녹음 내용)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
6.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제7조에 따른 입·출고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반납

②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영상·음성의 녹화·녹음, 휴대용 보호장비의 자료 저장 상태 확인
2. 휴대용 보호장비 장애의 경우 자체진단·고장신고 및 장애기록 유지
3. 휴대용 보호장비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으로 전송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의 전송 여부 등 확인
4. 휴대용 보호장비 및 관련 기기 운영·관리

제6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영 기준)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연결된 때에만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것
2.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의 전송이 완료되면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삭제할 것

제7조(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 및 입·출고 담당자 지정) ①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관리책임자(정): 사용부서(동)의 부서(동)장
2. 관리책임자(부): 사용부서(동)의 주무팀장

②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출고를 관리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담당공무원은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입·출고를 관리한다.

③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서 출력한 입·출고 내역 자료로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

(부)를 입·출고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① 휴대용 보호장비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휴대용 보호장비는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휴대용 보호장비의 분실, 피탈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제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휴대용 보호장비 보안관리)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관리책임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소의 지정 및 운영) ①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담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고소, 고발 등 (이하 “법적조치 등”이라 한다)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그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 고발 등을 위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할 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보관기간을 연장한 기간까지로 할 수 있다.

③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자의적으로 편집이나 삭제를 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반드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⑥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 정보 또는 개인음성 정보가 유출되거나 정보가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인의 열람 등 요구) 민원인의 영상 및 음성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2조(영상·음성기록 증거물 작성)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파일 또는 음성파일을 CD, DVD 등의 형태로 제작하고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 표면에 일시, 장소, 민원 처리 담당자 성명, 민원인 성명 등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을 제출할 시 부서(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용자 교육)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최초 사용 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내용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사용지침,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에게 제1항의 교육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호출장치·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 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 3. 폭언·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 4.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 나목·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2.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3.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 4.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민원여권과		
의안명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유	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검 토 의 견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공고 제2023-1043호

공 시 송 달

- 성 명: 주식회사**피앤씨 외 4인
- 주소 또는 거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4로 ○○-○, ○○○호 (불당동) 외 4건
- 서류의 명칭: 2023년 6월 부동산 취득세 과세예고통지서 (5건)
- 서류의 내용: 「별지 작성」
- 공고기간: 2023.6.26. ~ 2023.7.10. (14일간)

위의 서류를 2023년 6월 2일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이거나 주소, 거소, 영업소(사무소)가 불분명하여 등기우편 반송되어옴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6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2023년 6월 부동산 취득세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승달 내역

연번	과세번호	납세자명	현주소	과세예고세액 (원)	반송사유
1	101501 202307 2 620 016608	주식회사**피앤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4로 00-0, 000호 (불당동)	42,042,690	수령인 없음,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 불명
2	101501 202307 2 620 016617	주식회사**미앤씨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61길 00 (상도동)	36,228,400	수령인 없음,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 불명
3	101501 202307 2 610 016836	주식회사 신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고개로50번길 00-0 (도화동)	83,612,670	수령인 없음,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 불명
4	101501 202307 2 620 016608	김*승 주식회사**피앤씨 대표 [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23번길 00, 000동 000호 (송촌동)	42,042,690	수령인 없음,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 불명
5	101501 202307 2 610 016836	임*자 주식회사** 대표 [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53길 00-0, 000호 (신월동)	83,612,670	수령인 없음,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 불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 2023-104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3-2호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추홀구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6월 26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위	센터장	성명	김태화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액)		비고
▶ 토지(소계)					30,550		(단위 : 천원)
본인	임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 631.00㎡			27,449 (27,449)		
본인	임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 159.00㎡			3,101 (3,101)		
▶ 건물(소계)					5,309,724		
본인	상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청라리치아노빌딩 677,388.00㎡			1,599,388 (1,599,388)		
본인	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84.90㎡			466,000 (466,000)		
본인	단독주택	인천광역시 중구 문남동 대지 650.10㎡ 건물 188.00㎡			498,000 (498,000)		
본인	상가	인천광역시 중구 문서동 건물 59.40㎡			550,000 (520,000)		
본인	오피스텔	인천광역시 중구 문서동 건물 55.44㎡			87,318 (87,318)		
본인	오피스텔	인천광역시 중구 문서동 건물 55.44㎡			87,318 (87,318)		
모	다가구주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서리 풍세빌라 건물 54.78㎡			21,700 (21,700)		
차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전라남도 순천시 삼사면 쌍지리 요양원 건물 1,299.00㎡			2,000,000 (2,00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20,000		
본인	자동차	2022년식 레이 배기량(998cc)			15,000 (15,000)		

차녀	자동차	2022년식 배기량(3,000cc)	105,000 (105,000)
▶ 예금(소계)			
본인		(주)KEB하나은행 888, KB증권 8, 광주은행 200, 교보생명보험 18,980, 농협손해보험 3,220, 농협은행 7,777, 농협중앙회 48,086, 롯데손해보험 1,980, 미래에셋증권 157, 산림조합중앙회 1,020, 새마을금고중앙회 13,306, 수협은행 543,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1,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2, 신한은행 1,346, 우리은행 50, 우체국 498, 웰컴저축은행 7, 하나증권 98,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50,515, 한화손해보험 3,576, 현대해상화재보험 59,373, 흥국화재해상보험(주) 11,916	223,568
모		농협중앙회 4,675	4,675
장녀		(주)카카오페이증권 6, 국민은행 4,482, 농협손해보험 450, 농협은행 20, 농협중앙회 1,494, 신한은행 1, 하나증권 2,489, 현대해상화재보험 4,289	13,231
차녀		(주)KEB하나은행 8, DB손해보험(주) 2,002, 국민은행 5,155, 농협은행 1, 새마을금고중앙회 58, 수협은행 3,303,157, 토스증권(주) 5, 하나증권 736, 현대해상화재보험 1,081	3,312,198
▶ 증권(소계)			
본인	상장주식	KG모빌리티 15주	131
본인	비상장주식	성원건설 460주	2,300
차녀	상장주식	한솔로지스틱스 1주	2
▶ 채무(소계)			
본인	금융채무	교보생명보험 15,020, 국민은행 382,237, 농협중앙회 983,824, 새마을금고중앙회 120,000, 수협은행 779,000, 우리은행 10,25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31,350	2,403,725
			2,321,681

본인	건물임대채무	인천광역시 중구 문서동 2건 임대보증금	6,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청라리치아노빌딩 임대보증금	50,000
차녀	금융채무	신한카드 28,044	28,044
총 계			6,612,654

소속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위	(진)센터장		성명	김효경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증전가액	변동액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증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 건물(소계)			490,000	0	490,000		
본인	다세대주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채티빌라 건물 42.50㎡	190,000	0	190,000		변동 없음
본인	아파트(전세(임차)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더샵 인천스카이타워 1단지 건물 41.96㎡	300,000	0	300,000		변동 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53,000	0	53,000		
본인	자동차	2018년식 아반떼 배기량(1,591cc)	12,000	0	12,000		변동 없음
본인	자동차	2014년식 스파크 배기량(985cc)	2,000	0	2,000		변동 없음
본인	자동차	2019년식 레이 배기량(998cc)	9,200	0	9,200		변동 없음
본인	자동차	2016년식 모닝 배기량(998cc)	4,900	0	4,900		변동 없음
본인	자동차	2013년식 스파크 배기량(985cc)	1,900	0	1,900		변동 없음
본인	자동차	2017년식 다마스 벤 배기량(796cc)	5,000	0	5,000		변동 없음
본인	자동차	2023년식 레이 배기량(998cc)	18,000	0	18,000		변동 없음
▶ 예금(소계)			93,872	2,796	96,668		

본인	161투자증권 7, SK증권 122, 국민은행 16,010(300 증가), 농협은행 10,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2,429, 신한은행 55,588(2,496 증가), 우리은행 8, 현대해상화재보험 896, 흥국화재해상보험(주) 595	72,319	2,796	0	75,115	근로스득
모		15,768	0	0	15,768	
차남	DH손해보험(주) 480, 국민은행 1,773, 라이나생명보험 1,883,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818, 신한은행 8, 현대해상화재보험 604, 흥국화재해상보험(주) 219	5,785	0	0	5,785	
▲ 증권(소계)		3,000	0	0	3,000	
본인	비상장주식	3,000	0	0	3,000	변동 없음
차남	상장주식	0	0	0	0	
▲ 채권(소계)		105,000	0	0	105,000	
본인	사인간채권	105,000	0	0	105,000	변동 없음
▲ 채무(소계)		209,600	0	0	209,600	
본인	금융채무	209,600	0	0	209,600	변동 없음
총 계		535,272	2,796	0	538,068	증감액: 2,796천원 (기액변동: 0천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3-1055호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정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정정공시합니다.

2023년 6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

①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정정공시

- 1. 공시대상: 개별주택 2호
- 2. 공시사항: 주택소재지,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개별주택가격
- 3. 열람방법: 미추홀구청 세무1과 방문 및 전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이용
(www.realtyprice.kr)

② 정정공시 내역

연 번	주택 소재지	공시면적(㎡)		정정가격(원)
		토지산정면적(㎡)	건물산정면적(㎡)	
1	주안동 22-44 (1동)	100.05	54.66	118,000,000
2	주안동 1161-96	124	223.16	179,000,000

미추홀구 제2023 - 1057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제1항 및 동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최고)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6일

미 추 홀 구 청 장

1. 공고내용 : 도로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6. 26. ~ 2023. 7. 11. (15일간)
3. 법적근거 : 도로법 제7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 공고 및 게시장소 :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대상자 및 내용

성명	주소	위반 장소 및 일시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납부기한	반송사유
김○자	부평구 일신로39번길 00(일신동)	미추홀구 아암대로132 능해 고가 밑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상 노점좌판 등을 무단적치 (1×2m)	206,000원	2023. 6. 30.	폐문부재

6. 송달 내용

- 가.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한 내 미추홀구청 도시경관과에서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과태료는 납부기한이 경과할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최초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고, 이후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증가산금이 추가되며(최대 5년간 75%까

지 증가산금이 부과됨)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52조(관허사업제한), 제53조제1항(신용정보제공), 제54조(감치(監置)), 제55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미추홀구청 도시경관과(☎032-880-447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 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3-10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2회계연도 예산회계 세입·세출 결산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제273회 정례회에서 승인 의결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2회계연도 예산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6. 2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이영훈

2022회계연도 예산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내용(총괄)

(단위: 원)

구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현액			1,083,648,023,505	1,059,080,936,135	24,567,087,370
결 산 액	세 입		1,085,872,407,262	1,060,917,283,210	24,955,124,052
	세 출		972,621,271,668	956,523,856,933	16,097,414,735
결산상 잉여금			113,251,135,594	104,393,426,277	8,857,709,317
결 산 상 잉 여 금	소 계		52,377,987,950	52,099,612,870	278,375,080
	명 시 이 월		17,818,781,233	17,670,781,233	148,000,000
세 부 내 역	사 고 이 월		1,327,903,810	1,317,433,810	10,470,000
	계 속 비 이 월		33,231,302,907	33,111,397,827	119,905,080
세 부 내 역	보 조 금 반 납 금		15,830,004,187	15,486,379,797	343,624,390
	순 세 계 잉 여 금		45,072,521,871	36,836,812,024	8,235,709,847

- ※ 특별회계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 ※ 자금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로 별도 표시
- ※ 결산자료 게시 : 미추홀구 홈페이지(<https://www.michuhol.go.kr>)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3-106호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분 준공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425-2번지 일원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91호(2008.05.26.)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인천광역시남구 고시 제2016-144호(2016.08.08.)로 사업 시행 인가된 주안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및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부분 준공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정비사업 종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사업 명칭: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 정비사업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425-2번지 일원
 - 나. 면 적 : 129,593.4㎡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조합명 :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 3층

5. 준공인가의 내역

가. 건축시설(공동주택)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대지면적	105,994.5㎡	건축면적	16,213.8㎡
연 면 적	413,958.2㎡	층 수	지하3층 ~ 지상40층
건 폐 율	15.3%	세 대 수	2,958세대(22개동)
용 적 률	258.59%	주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정비기반시설은 금회 준공에서 제외

6. 부분 준공일자 : 2023.06.26.

7.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과(☎032-880-7948)로 연락바랍니다.